

2024년도 제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4. 1.(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최태경,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4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안건 1,159건(안건번호 제2024-22333호~제2024-2349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22333호~22338호(순번 1번~6번)는 저작물의 합법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안으로, 이러한 유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체위원회 회부를 결정함.
안건번호 제2024-22339호~제2024-22359호(순번 7번~27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인 사안으로,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2360호~제2024-22362호(순번 28번~30번)는 블로그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4-22363호~제2024-23491호(순번 31번~1159번)는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4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심의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고 비공개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3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159건의 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6번은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 2곳에 게임 및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이며 총 6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7번~2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 '○○○○'와 '★★★★ ★★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36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8번~30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 블로그 게시물을 통하여 '◇◇◇◇◇ ◇◇◇◇' 등 영상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이며, 총 4건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 4, 6번은 과거에 유료로 판매되었으나 현재는 상업적 가치가 희소한 게임저작물 등을 복제·전송 중인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자의 복제·전송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점, 원저작물이 차츰 인기를 얻어 공중에 확산될 경우 상업적 성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온라인상의 다량 불법복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순번 2, 3, 5번은 무료 소프트웨어를 복제·전송 중인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시장가치가 현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복제·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직접 구제 시도 등이 저작자에 의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으나, 무료 소프트웨어일지라도 무료 배포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영리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저작권침해 및 시정권고 대상이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보임. 이 점 고려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 4, 6번의 게임이 현재 구글 게임에서 다운로드 가능함을 확인하였는지 문의드림. MAME 사이트를 통하여

ROM에 있는 대부분의 게임들은 오픈소스로 볼 수 있음. 다만 이런 경우는 저작권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상태도 아닌 형태임. 순번3번 ■■■■■■ 또한 일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에뮬레이터를 제작한 것임. 다만, 자신이 개발한 것이 아니며 상업적 목적도 보임.

순번 1~6번은 합법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사라진지 오래된 저작물이거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포된 저작물로,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처리에 관하여 통일된 규칙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전체위원회 회부 의견임.

- B 위원: 순번 1, 4, 6번의 경우 최초 배포될 때 유료였고, 순번 2, 3, 5번의 경우 무료였다는 차이가 있음.
- 박현주 전문위원: 저작물이 무료로 배포되었으나, 이용허락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까지 허락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 등을 논의할 여지가 있음.
- A 위원: 순번 2,3,4의 경우,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해당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저작권자에게 급박한 피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시정권고 제도 취지 중 하나인데, 해당 안건의 경우 권리자가 어떠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지 확인할 수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무료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유료로 배포되었으나 합법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전체으로 통일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임.
- C 위원: 미끼 효과의 정도가 크냐 적으냐의 차이는 있더라도 1%의 미끼 효과가 있다면 이것이 불법복제물이 더 많이 확산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6번의 전체위원회 회부에 대하여 참석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6번은 저작물의 합법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포된 저작물에 대한 사안으로 이러한 유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체위원회 회부를 결정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7번~27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인 사안으로, 판매 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번~27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28번~30번은 블로그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8번~3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31번~115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1,129건임. 총 게시물 수는 1,647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소프트웨어,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황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54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황야' 전체 회차를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1. 26. 개봉한 국내 영화로 넷플릭스에서 서비스중인 국내 영화임.
(게임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

서)순번 811번은 웹하드에서 '페르시아의 왕자:잃어버린 왕관'을 유료로 판매중인 사안으로, 2024. 1. 18. 발매한 피시 게임으로 유비소프트스토어에서 54,800원에 판매중임.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 202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31번은 웹하드에서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 2024'를 유료로 판매중인 사안임. 2023. 10. 12.부터 발매한 프로그램으로 한컴 홈페이지에서 99,000원에 판매중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31번~1159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1번~115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22333호~22338호(순번 1번~6번)는 전체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고, 안전번호 제2024-22339호~제23491호(순번 7번~1159번)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4. 8.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최태경

위원 홍승기